결로방지 운영지침 협의사항 검토결과

협의사항	검토결과
① 제출도서 날인대상 추가 - (현행) 사업주체 → (**변경**) 사업주체 및 **건축사** ※ (사유) 「건축법」에서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을 건축사가 지도록 건축사가 날인토록 하고 있음	**(승인)** ○ 설계도서에 대한 **책임성 강화 및 법 규정 준수**를 위해 제출도서에 **건축사도 날인토록 함**
② 평가서류 제출방법 다양화 - (현행) 설계도서 → (**변경**) 설계도서 또는 **CD** ※ (사유) 신청자가 설계도서 출력 및 제본에 상당한 행정력 및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, CD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	**(승인)** ○ CD에 담긴 자료는 **위·변조가 불가능**하며, 평가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**해당 부분을 출력하여 확인**할 수 있으므로, - 신청자의 구비서류 작성시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**CD 제출 허용**(단, CD 표면에 사업주체, 건축사의 날인 필요)
③ 창 및 문에 대한 평가결과에 **변경 가능 조건 명시** - 평가결과서에 시험성적서 대신 **모델명을 기입**하고, **동등 성능 이상 제품으로 사용**할 수 있다는 **문구 명시** ※ (사유) 평가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당 제품을 설치하고 있어, 해당 제품 개선, 신제품 개발 등으로 해당제품이 단종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마련 필요	**(승인)** ○ 창 및 문에 대한 **결로방지성능 평가시기와 설치시기가 상당한 차이**가 나므로 KOLAS 시험기관의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제품 또는 **동등 성능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**